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문책규정 제정 사전예고

1. 제정 이유

- 「공공기관 사망사고 경영진 책임강화 방안(관계부처합동, '20.6月)」의 후속조치 이행

2. 주요 개정 내용

- 임원 문책 규정의 적용대상과 안전관리 책무를 정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임원의 문책 사유를 정함
- 문책의 종류를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로 구분하고, 그 효과를 정함
- 문책의 양정은 이사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되, 해임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
- 담당자(이메일) : pkbjj@khug.or.kr

○ 전화번호 : 051-955-5372

○ 팩스번호 : 051-955-5605

4. 예고기간 단축사유(기간 20일 미달 시)

○ 적시성 있는 규정 반영을 통한 임원 책임경영 강화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제정 2020.09.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임원(임명권자가 사장인 정관 제34조에 따른 상임이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공사의 임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문책의 사유) 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5조(문책의 종류와 효과) ① 문책은 해임·연임제한·업무배제·기본연봉 감액·경고·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임
2. 연임제한
3. 업무배제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연봉 감액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기본연봉 월액의 3분

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5. 경고 : 이사회 심의를 거쳐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 2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6. 주의 : 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임제한은 업무배제를 병과한다.

제6조(문책의 절차) ① 사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부의(“주의”는 제외한다)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사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임은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⑤ 문책양정, 이사회 심의·표결, 문책의 재심의, 문책처분의 집행, 문책의 시효 등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사의 징계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부 칙 <2020.9.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사규관리규정 [별표1] 사규분류표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분류	사규번호	사 규 명	공개여부	제개정 사전 예고 여부	소관부서
제4편 인사 복지	4-30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문책규정	공개	예고	인사처

②이사회규정 [별표] 이사회결의규정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구 분	규 정 명
인 사 복 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별표]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

관련법령		위반 의무	문책유형
직영 및 도급	산업안전 보건법	① 작업설비 등 부적절, 고장(규칙 제9조 등) ②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1조 등) ③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규칙 제12조 등) ④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규칙 제39조 등) ⑤ 위험상황 작업강행(규칙 제37조 등) ⑥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 ⑦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법 제69조제1항·제2항)_도급인 ⑧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법 제71조제3항 후단)_도급인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①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 ②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11조제4호 등)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규칙 제36조 등) ④ 작업계획·점검 미 실시, 부적절(규칙 제38조제1항 등) ⑤ 작업방법 부적절(규칙 제38조제3항 등) ⑥ 작업시간·기간 불충분(규칙 제421조제1항 등) ⑦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규칙 제318조 등) ⑧ 작업지시·신호 미 실시, 부적절(규칙 제40조 등) ⑨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규칙 제11조 등) ⑩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규칙 제96조 등) ⑪ 안전교육 미 실시, 부적절(규칙 제89조 등) ⑫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법 제70조제2항후단)_도급인 ⑬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 실시(법 제64조제1항제5호)_도급인 ⑭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법 제65조제1항)_도급인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① 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규칙 제6조제2항 등) ②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규칙 제11조제5호 등) ③ 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규칙 제6조제3항 등) ④ 작업수칙·지시 위반(규칙 제436조 등) ⑤ 전도 방지 미조치(규칙 제3조 등)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발주	산업안전 보건법	①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제69조 제1항·제2항) ② 설계변경의무(제71조제4항) ③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제70조제1항) ④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제68조제1항) ⑤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의무(제67조제1항)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건설기술 진흥법	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 ②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 ③ 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 ④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⑤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령	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③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전기 공사업법	①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전기 사업법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②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사업용·자가용) ④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⑦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일반용) ⑧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⑨ 제73조의8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⑩ 제73조의4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전력기술 관리법	①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④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정보통신 공사업법	①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②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소방시설 공사업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문화재 수리등에관한 법률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대형사고 등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임